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권 하 늬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영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권 하 늬

권하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박 정 민 (인)

부위원장 Yoo Joan Paek (인)

위 원 김 수 영 (인)

국문초록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권하늬

본 연구는 현 제도가 충분히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연구가설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연구의 관심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피해자가 말하기의 대상, 범위, 내용, 목적 등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 – 경찰에 신고하기(Reporting to police),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Help-seeking to agency) – 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를 주변인에게 말하기(Speaking-out to people around)의 양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험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 지원기관, 주변인에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말하기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질적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7인 대상 개별 심층면접과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4인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에는 강제추행, 성폭행, 스텔싱,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한 대상은 경찰, 변호사, 상담기관, 직장, 대학교 담당부서, 주변인(가족, 친구, SNS, 공적모임) 등으로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목격한 것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틀 분석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분석과 심층면접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귀납적 분석을 교차하면서 질적 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의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주변인에게 말하기의 틀을 구성한 후 각 틀의 주제가 될 내용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이론이나 관련 선행연구를 확인하여 이론적 분석틀 및 주제를 검증하였다. 이후 주제별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였으며, 배치된 자료가 갖는 의미를 통해 유기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막는 요인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 및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란 '성폭력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성범죄 가해 변호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최근 가해자가 성범죄 전담법인의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여,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개인사·성적 이력 활용 등을 법적 공방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법적 공방이 변질 및 과열되고, 법적 지원으로 관심이 쏠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비해 법적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에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의 사적 대응이 늘어나는 탈제도화·개인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의 성폭력 사건 대응이 계층화되는 위험이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 사실 신고 및 수사 개시를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경험은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지원기관 접근의 어려움'과 '지원기준에 대한 검열', '지원기관의 업무 과중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피해자들은 지원기관 접근의 한계에 부딪혀 필요한 지원 자원을 찾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보를 피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유용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으로, 지원기준에 대한 검열이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에게 지원기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기 검열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지원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지원기관의 검열이 있었다. 또한 지원기관 종

사자들은 지원기관 업무의 과중화로 인해 피해 지원 업무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의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주변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함으로써 벌어지는 역동에 대해 살펴본 것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는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커다란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은 또 다른 외상을 초래함으로써 다시금 피해자들을 침묵의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경찰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역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를 가능케 한 법제도의 허점과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신고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예방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자원을 확충하고 지원제도 및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게이트웨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지원기관의 접근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와 회사 등의 일상조직 내 성폭력 담당 부서를 확충하여 성폭력 지원체계의 중간조직 또는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제도 밖에서 주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발견한 결과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부분을 강화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주변인 교육'의 활성화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련된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차별점 및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 어떤 고민과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어려움을 개선해낼 방법을 구하였다. 또한,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여성학계에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해 온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이끌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폭력 말하기,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경찰 신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제도적 제약, 질적 연구
학 번 : 2019-2623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5
제 1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이해 ····· 5
1.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정의 및 특성 ····· 5
2.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 ····· 7
제 2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결정요인 ····· 14
1. 범죄의 특성 및 인구학적 요인 ····· 14
2. 사회문화적 요인: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 ····· 16
3. 기존 연구의 한계 ····· 19
제 3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요인 ····· 21
1. 제도적 요인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 ····· 21
2.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괄 ····· 23
3.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5

제 3 장 연구방법 ····· 27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 27
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 27
제 3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 33

제 4 장 연구결과 ····· 35
제 1 절 경찰 신고 과정의 제도적 제약 ····· 35
1.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 ····· 35
2.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 ····· 40
3.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 ····· 44
제 2 절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의 제도적 제약 ····· 47
1. 지원기관 접근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영향 ····· 47
2. 지원기준에 대한 검열 ····· 53
3. 지원기관의 업무 과중화 ····· 55
4. 기타 기관에서의 지원 경험 ····· 57
제 3 절 제도 밖에서 주변인에게 말하기 ····· 60
1.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주변인의 지지 ····· 60
2. 또 다른 외상을 남기는 주변인의 반응 ····· 63

제 5 장 결론 ····· 66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제언 ····· 66
제 2 절 연구의 한계 ····· 73

참고문헌 ····· 75

표 목 차

[표 2-1]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 ····· 8
[표 2-2] 주위 도움 요청 대상 ····· 9
[표 2-3]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12
[표 2-4]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13
[표 2-5]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현황 ····· 24
[표 3-1] 피해 당사자 연구 참여자 정보 ····· 30
[표 3-2] 지원기관 종사자 연구 참여자 정보 ····· 30
[표 3-3] 질문지 ····· 31

그 림 목 차

[그림 4-1] 포털사이트 '성폭력' 검색 화면 ····· 4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시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는 목격자가 없으며, 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는 곧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밀폐된 곳에서(behind close doors)” 발생하는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Black, D., 1995).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나 한국 사회의 성범죄 암수율[1]은 최대 168배까지도 추정된다(여성가족부, 2010). 성범죄의 암수율이 높다는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피해자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회복의 가능성을 낮출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는지를 체계화한 이론 및 연구는 거의 없다. 다행히 법학·범죄학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범죄 신고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선행연구들은 이를 기반으로 주로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성범죄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Norris, J., & Feldman-Summers, S., 1981; Williams, 1984).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 신고 이론을 성범죄 신고에 그대로 적용한 연구는 기타 범죄와 구별되어야 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하여, 성범죄 피해 말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

1) 암수율: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

이에 성범죄 피해가 잘 알려지지 못하는 구조는 사회문화적 인식에 대해 조명하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주로 설명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성폭력 통념'으로 총칭되는 피해자 낙인·피해자 비난·피해 사소화·피해 의심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낙인 효과의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저해하는지를 살펴보았다(김재엽 외, 2011; 김민정 외, 2017; 김보화 외, 2017). 그러나,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는 자기 낙인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피해에 대한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므로 말하기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설명(Lizotte, A., 1885; Katz & Mazur, 1979; Williams, 1984; Bachman, 1998; Zinzow, H. & Thompson, M., 2011)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2018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대적인 말하기 운동인 '미투(#Me Too) 운동'을 경험하였다. 미투 운동은 과거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며, 성폭력 피해 말하기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과거에는 공권력 및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경험이 법적 투쟁의 과정이나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속에서 드러나거나,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는 말하기 대회나 자조모임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자서전·수기·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피해 경험을 말하는 방식들이 존재했다면 미투 운동은 종교계·정치계·문학계·연극계·영화계·검찰계·학교 내 등 사회 전영역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김보화, 2018).

일련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이상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성폭력 피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는 늘어났을까? 안타깝게도 피해 사실을 발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성폭력 신고율이나 피해 지원 체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왜 성폭력 피해 말하기는 지원 제도 이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 미투 운동 전후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

펴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였고, 앞선 문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높은 응답률과 함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피해자들은 더이상 자신의 피해가 '수치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위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인식 측면에 주목한 논의,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을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던 것을 넘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수행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현재의 제도적 환경이 충분히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제도 내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 제약 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제도의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경찰에 신고하기,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주변인에게 말하기로 구분하여 말하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말하기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질적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7인 대상 개별 심층면접과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4인 대상 심

층면접을 진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주제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폭력 피해가 외부에 알려지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된 논의일 수 있지만, 성범죄 신고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것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등장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수법이나 형태는 빠르게 고도화·음지화되고 있다(김정혜, 2020; 전수아 외, 2021).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약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 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약 조건을 개선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이해

1.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정의 및 특성

‘성폭력’의 개념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오랫동안 성폭력은 ‘정조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었지만, 현재 성폭력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 1995년 형법상 ‘정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하며, 법률이 보호해야 할 가치를 성적 순결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채현숙, 2016). 그리고 그 기반의 변화가 시작된 곳에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 말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먼저,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뜻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말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는 오래전부터 강조되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꺼내놓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성폭력 피해생존자 말하기’ 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71년 뉴욕의 성 클레멘트 교회에서 시작된 300여 명의 성폭력 피해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최로 200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김보화, 2018).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방법 외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상, 범위,

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하기(tell or speak-out), 폭로(disclosure), 피해에 대한 도움 구하기(help-seeking), 경찰에 신고하기(report to police) 등이 있다. 피해자의 주체성을 강조할 때 성폭력 피해 말하기는 용기 내어 말하기(speak-out)로 표현되는가 하면(이미경, 2018; Battaglia et al., 2003; Kathryn L. Norsworthy & Ouyporn Khuankaew, 2004),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과 같이 보호자에 의해 최초로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을 때는 폭로(disclosure)의 표현을 사용하였다(최혜정, 2018; Sorensen, T. & Snow, B., 1991; Smith et al., 2000; Hunter, 2011). 이와 구별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상담 시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Belle Liang et al, 2005; Nicole & Diane, 2013). 또한, Vopni, Vicki(2006), C. Spencer et al., (2017), Barrett, C.(2018), Shamus R. et al(2018)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대해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개념을 적용하지만, 성폭력 피해 말하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외부에 알리는 모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성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이든 상담을 하거나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것이든, 또는 SNS를 통한 비공개적 말하기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말하기의 대상, 범위, 내용, 목적 등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성폭력 피해 말하기로 정의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발화 행위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기관에게 피해를 말하고자 한 결정 과정과 말하기 이전과 이후에 벌어지는 역동 전체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

현재 성범죄 관련 주요 통계들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의 공공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공식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신고된 범죄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사인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이 절에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피해 경험과 피해 경험 말하기의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를 개괄하고자 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에 시행되었으며 표본의 규모는 2200명, 3500명, 7200명, 1010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과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호, 성기노출 등,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성폭력 피해율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실제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과 그 중 드러나지 않은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모든 조사·통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대략적인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짚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배경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다음의 <표2-1>에 정리한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Speaking-Out)에 대해 2013년 전체 응답자의 33.4%, 2016년 전체 응답자의 37.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Help-seeking)에 대한 질문에는 2019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6.2%만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유무(Reporting to Police)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1.4%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와 이후 두 항목의 조사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 이상의 범위인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표 2-1>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

(단위: %)

질문 내용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 있는지 유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유무
조사연도		2013	2016	2019	2019
n	전체	471	2724	3,135	3,135
	여성	425	2407	2,805	2,805
	남성	46	317	330	330
있음 (%)	전체	33.4	37.9	6.2	1.4
	여성	35.3	48.1	7.6	1.7
	남성	15.3	14.0	2.5	0.7
없음 (%)	전체	66.6	62.1	93.8	98.6
	여성	64.7	51.9	92.4	98.3
	남성	84.7	86.0	97.5	99.3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6; 2019), 성폭력 실태조사.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가? Ruback et al.(1984)은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한 후, 대처방안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의 <표 2-2>는 각 대상에 대해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가족이나 친척, 선후배, 이웃이나 친구로 나타나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 가운데에서는 가족보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을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2-2> 주위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대상	구분	2016년	2019년	대상	구분	2016년	2019년
n	전체	1155	219	여성긴급전화 1366	전체	0.1	1.9
	여성	1110	210		여성	0.1	2.1
	남성	45	9		남성	0.0	-
경찰서 (112,사이버 수사대 등)	전체	1.9	·**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입소시설)	전체	0.1	2.4
	여성	2.2	·		여성	0.1	2.7
	남성	0.0	·		남성	0.0	-
가족이나 친척	전체	46.6	36.9	해바라기 센터	전체	0.0	1.6
	여성	49.5	39.6		여성	0.0	1.8
	남성	23.2	14.0		남성	0.0	***
선후배	전체	19.7	19.5	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전체	0.2	1.2
	여성	18.8	16.7		여성	0.2	1.4
	남성	26.8	43.2		남성	0.0	-
이웃이나 친구	전체	83.1	60.7	직장 상사 및 직장 내 성폭력 담당 부서	전체	·	6.3
	여성	82.6	61.7		여성	·	7.0
	남성	86.9	52.7		남성	·	-
학교 교사나 종교 지도자	전체	1.0	8.3	기타	전체	1.4	-
	여성	1.1	7.1		여성	1.6	-
	남성	0.0	18.3		남성	0.0	-

* 복수응답, ** · :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 : 응답 없음,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9), 성폭력 실태조사.

반면 <표 2-2>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피해발생 온라인 사이트별 신고창구 등의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기준 0.1~0.2%, 2019년 기준 1.2~2.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1.9~2.2%인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떤 이유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다음의 <표 2-3>과 <표 2-4>에서는 조사 참여자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게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응답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3>에서 나타나듯 2개 연도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2013년 응답률 49.0%에 비해 2019년도 응답률은 36.6%로 나타나 불과 6년 만에 약 13% 가까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거가 없어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줄어들었다. 대신, 같은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늘어나 2019년에는 2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인 항목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다. 2013년 해당 항목의 응답률은 5.3%였으나 2019년에는 16.7%로 약 11% 늘어났다. 그 결과 2019년 조사 결과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5.3%인 것에 비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6.7%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36.6%)',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20.8%)',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6.7%)',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15.3%)', '증거가 없어서(6.0%)'의 이유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

<표 2-4>에 정리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2-3>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3개 연도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2013년 응답률 52.6%에 비해 2019년도 응답률은 35.7%로 나타나 꽤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인 항목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나타나, <표 2-3>에서 확인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의 증가 추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2013년 해당 항목의 응답률은 14.4%였으나 2019년에는 29.3%로 약 15% 늘어났다. 하지만, 그 결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19년 기준,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라고 응답한 0.4%보다 약 73배,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라고 응답한 6.7%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응답률이었다.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35.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9.3%)', '증거가 없어서(8.7%)',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7.9%)'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6.7%)'의 이유 순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표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 내용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설명력을 갖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현 실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가 본 연구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어지는 절에서 관련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표 2-3> 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구분	2013	2019
n	**전체**	**157**	**206**
	여성	149	197
	남성	7	9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전체**	**49.0**	**36.6**
	여성	47.2	36.4
	남성	86.3	38.6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전체**	**17.6**	**20.8**
	여성	18.4	22.0
	남성	0.0	11.4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전체**	**5.3**	**16.7**
	여성	5.5	16.6
	남성	0.0	18.0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전체**	**18.6**	**15.3**
	여성	19.5	14.9
	남성	0.0	18.0
증거가 없어서	**전체**	**8.5**	**6.0**
	여성	8.2	6.7
	남성	13.7	-*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전체**	**0.0**	**-**
	여성	0.0	-
	남성	0.0	-
기타	**전체**	**1.0**	**3.1**
	여성	1.1	1.7
	남성	0.0	14.0
무응답	**전체**	**-**	**1.5**
	여성	-	1.7
	남성	-	-

* - : 응답 없음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9), 성폭력 실태조사.

<표 2-4>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

(단위: %)

		2013	2016	2019
n	**전체**	**151**	**1,129**	**3,086**
	여성	144	1,084	2,759
	남성	7	45	327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전체**	**52.6**	**50.1**	**35.7**
	여성	50.2	49.1	32.4
	남성	100.0	58.1	44.7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전체**	**14.4**	**20.9**	**29.3**
	여성	15.1	21.3	29.5
	남성	0.0	17.7	29.0
증거가 없어서	**전체**	**13.8**	**10.5**	**8.3**
	여성	14.5	9.7	10.3
	남성	0.0	17.0	2.8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전체**	**·***	**3.6**	**7.9**
	여성	·	3.9	8.3
	남성	·	0.9	6.8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전체**	**12.8**	**5.6**	**6.7**
	여성	13.4	6.3	8.2
	남성	0.0	0.0	2.5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전체**	**1.5**	**4.1**	**4.0**
	여성	1.6	3.8	4.0
	남성	0.0	6.3	4.2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전체**	**2.2**	**3.9**	**3.1**
	여성	2.3	4.4	3.5
	남성	0.0	0.0	2.2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2)	**전체**	**0.0**	**0.1**	**3.5**
	여성	0.0	0.1	2.4
	남성	0.0	0.0	6.5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전체**	**2.0**	**0.2**	**0.4**
	여성	2.2	0.3	0.5
	남성	0.0	0.0	-**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으므로 (제대로 도움/정보를 제공받지 못해)3)	**전체**	**0.8**	**0.5**	**·**
	여성	0.7	0.5	·
	남성	0.0	0.0	·

1) 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 및 '무응답' 문항의 전체 응답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타: 2013년(0.0%), 2016년(0.6%), 2019년(0.1%) / 무응답: 2019년(1.0%)
2) 당시 조사 문항: '사랑하는 사이라서'
3) 2019년도에는 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음
*· :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 응답 없음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6; 2019), 성폭력 실태조사.

제 2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결정요인

1. 범죄의 특성 및 인구학적 요인

법학·범죄학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범죄 '신고'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이는 성폭력 피해 신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초석이 되었다. 관련한 연구는 주로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범죄 신고 결정요인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Skogan(1984)이 제시한 비용편익이론(cost-benefit theory)에 입각하여 범죄 피해자의 신고 행동을 설명하였다(송윤아, 2014). 비용편익이론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피해 신고의 기대 이익과 기대 비용을 계산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및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상황이 피해 신고의 비용 또는 편익으로서 고려 대상이 된다. Gourdriaan et al.(2004)은 미시적 수준의 상황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 규모, 보상 가능성, 경찰 접근 수단, 경찰 반응 인식, 가해자 인지 여부, 가·피해자 관계, 보복위험 등을 언급하였다. 성폭력 신고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도 이와 같은 경제학적 모형에 기초하여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어떤 요인이 성폭력 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범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범죄의 심각성, 신고의 절차적 비용, 보상 가능성 등에 대해 범죄로 인한 손실액이 크고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등 범죄가 심각할수록 피해자의 신고 가능성이 증가하며, 절차적 비용이 낮고 보상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Norris, J., & Feldman-Summers, S., 1981; Baumer, 2002). 송주영, 송태민(2007)은 범죄의 특성 가운데에서도 가·피해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미국 여성에 대한 폭력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가해자의 보

복 가능성 등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마찬가지로 Hershkowitz et al.(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해자가 가족일 때에는 오히려 성폭력의 수준이 심각할수록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한 발짝 더 나아간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같은 조건의 범죄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인종, 거주지역, 소득·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성폭력 범죄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Lizotte A.(1985)의 연구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종에 따라 성폭력 신고율이 차이를 보였으며,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국가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Chon, 2014). Marudan(2019)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들은 경험적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경험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피해 신고의 편익 계산이 달라지며 이는 신고율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은 경제학적 모형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국가 구조 등의 중시적·거시적 수준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리학적·사회학적·사회생태학적 모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Goudriaan et al., 2005).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도 적절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였는데, 중시적·거시적 수준의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까지 인식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결국 일반적인 범죄와 성범죄를 동일한 특성의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Goudriaan et al.(2005)은 지역사회의 규범이 범죄 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

반적으로 주민 간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에 속해있을수록 범죄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지만, 성범죄 피해는 주민 간 유대가 강한 지역사회의 피해자일수록 신고 가능성이 낮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송윤아, 2014). 이를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막고 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인지한 채 피해자가 놓여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요인: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

앞서 살펴본 법학·범죄학적 접근의 한계로 인해 여성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정혜욱, 2011). 성폭력 범죄는 성별 권력 차이에 기반한 성범죄로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다른 기타 범죄와 달리 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성에 대한 규범의 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비난 현상이 잇따른다는 특성이 있다(Lerner, 1980). 경험적으로도 성범죄 신고율은 기타 범죄와 비교하여 특히 더 낮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Black, D., 1976).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대한 분석에는 이러한 현실에 맞는 설명이 요구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요인이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는 요소 중 교통・통신・수단 등 물질적 분야는 물론, 이것들을 다루는 인간의 사고방식・행동 양식・사회 규범・가치관 등 비물질 분야까지 포함하는 요소를 일컫는다. 즉, 아주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때 여성학적 관점의 논의는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을 '성폭력 통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총체적으로 지칭하며,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가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양상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형성·발전시켰다.

‘성폭력 통념’은 강간 통념(rape myth)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1970년대, 사회학자 Schwendinger, J. R., & Schwendinger, H.(1974)와 여성학자 Brownmiller(1975)에 의해 강간 통념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들은 강간 통념을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복잡한 문화적 신념’으로 일컫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강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강간은 통제할 수 없는 남성 욕구의 결과’라는 주장(Schwendinger,J.R., & Schwendinger, H., 1974), ‘유혹적인 피해자’와 ‘전형적인 가해자’를 상정하는 방식(Brownmiller, 1975)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강간 통념은 Burt(1980)에 의해 ‘강간과 강간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편향적이고 틀에 박히거나 잘못된 신념’으로 정의되었고, 강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됨으로써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후 성폭력 통념의 내용을 피해자 낙인, 피해자 비난, 피해 사소화, 피해 의심의 네 가지 범주로 구조화하고 성폭력 통념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재엽 외, 2011; 김보화 외, 2017). 그 결과로 알려진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낙인’은 성폭력 피해가 극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는 ‘정상적인’ 여성성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낙인을 의미한다. 김민정 외(2017)는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에 관한 낙인이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망가진 피해자’의 모습을 수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비난’은 피해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빌미로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피해자 비난 현상은 Lerner(1980)에 의해 ‘범죄나 사고, 학대 등 어떤 불행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운의 발생원인 및 책임을 돌리는 경향’으로 정의된 바 있는데, Carli(1999)는 비난 대상이 뚜렷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더 두드러지게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자책·검열하게 만듦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피해 사소화’는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는 행위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가해 남성이 ‘애정’을 표현한 행위라거나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한 것일

뿐이라는 세뇌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발화하기 어렵게 만든다(김보화 외, 2017). 이는 심지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끝으로, '피해 의심'은 피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거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심체적 · 심리적 피해 회복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신빙성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허선주, 조은경, 2012). 때문에 소위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맞냐?' 는 의심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린 결과가 도리어 성폭력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오기도 한다(허민숙, 2017).

위와 같은 성폭력 통념의 내용이 특히 피해자의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낙인 효과의 매커니즘에 기반하여 설명되었다. Corrigan(2004)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Self Stigma)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적 낙인은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자기 낙인은 사회가 낙인찍은(labeling)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Vogel et al., 2007). Vogel 외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의 관계에 대해,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자기 낙인'을 형성하고 행동을 통제한다. 다수의 연구들이 다른 폭력 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의 낙인과 비난을 의식하면서 수치감, 죄의식을 느끼고 피해사실을 말하기 꺼려한다고 언급하였다(Lizotte, A.,

1885; Katz & Mazur, 1979; Williams, 1984; Bachman, 1998; Zinzow, H. & Thompson, M., 2011). 또한,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결국 전문적 도움 추구를 회피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이민지, 손은정, 2007; 이지연, 강지연, 이인숙, 2008; 정진철, 양난미, 2010).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시급할 때조차도 피해 사건을 외부에 알릴 엄두를 내지 못함으로써 위험성을 높인다는 데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3. 기존 연구의 한계

본 절에서 살펴본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관한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의 인구학적 요인'이 성폭력 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수행되었다(송주영, 송태민, 2007; Baumer, 2002; Hershkowitz et al., 2007). 관련 연구는 비용편익 이론에 기초하여 성폭력 피해 신고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일한 조건의 범죄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별, 연령, 인종, 거주지역, 소득·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졌다. 이에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규범 및 사회구조 등의 중시·거시적 요인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설명 모형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Goudriaan et al., 2005), 이는 근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생긴 한계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후 여성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논의는 성폭력을 둘러싼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을 '성폭력 통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총체적

으로 지칭하며,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가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양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성폭력 통념으로 인해 비롯되는 피해자 낙인·피해자 비난·피해 사소화·피해 의심이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기제로 작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낙인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피해 사실에 대한 발화와 도움 추구 행동 등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에 주목한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 범죄 특성과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이러한 관점이 '현재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앞서 살펴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및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싫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관점의 접근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지는 추세였다(여성가족부, 2019).

만약 이 논문의 문제 제기와 같이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식 변화로 미루어보아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가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실태를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관점이 강조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위축된 수동적 존재로 묘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논의는 성폭력 신고율 제고를 위해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수립에 집중되어 있었다(박명숙 외, 2008; 정혜욱, 2011). 하지만 인식 개선은 매우 더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성범죄 예방 신고율 제고의 목적으로 적극 도입된 성폭력 교육 의무화는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당장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막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이전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차원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제 3 절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요인

1. 제도적 요인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가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이미 귀속되어있는 범죄의 특성이나 피해자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등 미시적 수준의 요인에 집중하거나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에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분석할 때 널리 쓰이는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92)은 사회복지 기관·서비스 등의 제도적 요소를 미시체계와 거시체계의 사이에 위치시켜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의 개념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매우 달라져 왔다. 1950년대까지는 제도를 인간 행동·사회 문화·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장으로써 바라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보기에 어렵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제도의 구성을 묘사하거나 단순 비교하는 정태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김종성, 2002). 하지만 1970년대에 등장한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제도가 형성되어 작동·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는 내부의 규칙·구성 등을 통해 다시 인간 행동·사회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agent)로 변모할 수 있다는 관점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제도 자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erris and Tang, 1993: 4; 김난도, 1997:129 재인용).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의 운영 과정에는 제도의 규칙과 구성이 그 제

도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석하고 있는 곳은 빈곤 분야이다. 빈곤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비수급 원인에 대한 기본 모델로서 van Oorschot(1996)이 제시한 동태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와 행정적·제도적 수준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도의 진입부터 신청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허용창 외, 2020). 이를 통해 빈곤 정책의 정보 수집, 행정의 복잡성, 절차적 문제 등을 비수급 영향 요인으로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는 거부감이 크지 않음에도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수급 자격을 갖추었으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비수급 상태(van Oorschot, 1996)'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가 성폭력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현재의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미경, 2018; 홍미영, 박지영, 2019).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에서 본 논문에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미투 운동이 온라인 공간,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보화(2019), L. Manikonda et al(2018)등에서도 미투 운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활용하거나 경찰 신고, 형사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SNS를 통한 말하기 전략을 선택하였을까?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이미경(2018)과 홍미영, 박지영(2019)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하더라도 실제 제도가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어지는 절에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를 개괄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제도적 요인의 범위를 정하고, 성폭력 피해 지

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논의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괄

한국의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규정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역시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의 범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의 현황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산하의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검찰 및 경찰 서비스, 법률 구조 서비스 등이 있다. 자세한 제도의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현황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지원 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상시 Hot-Line을 운영하며 1차 긴급상담, 긴급보호(최대 7일), 의료·상담·법률 서비스 연계 등의 위기 개입 제공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7개소 운영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상담·법률 등 서비스 연계, 성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	전국 167개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최대 1년 6개월), 가정복귀 지원, 수사·재판과정의 동행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법률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전국 32개 시설 운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여성・아동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수사,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전국 40개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속 상담과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상담·법률 서비스 연계	중앙, 경기 1개소씩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및 민간기업의 사건 대응 지원, 업무 담당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중앙 1개소
검찰 및 경찰 서비스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법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등) 등을 제공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소 운영
법률 구조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등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홈페이지

3.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다(이미정 외, 2013; 전종설 외, 2014; 전종설 외, 2017).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도에 대해 피해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종설 외(2017)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전달체계의 범위와 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발견하고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홍보 강화 이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성폭력 지원 제도 내에는 상담, 의료,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이 기관들 간의 역할이 중복되고 모호하며 연계 방안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전종설 외, 2014). 일찍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미정 외, 2008). 또한 전종설 외(201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의 종사자 면접을 통해 성폭력 지원 제도 내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족한 예산과 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 지원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인상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도 힘에 부친다고 말하였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의 필요성도 일

부 언급되었다. 이미정 외(2013)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연말에 이르면 기금이 고갈되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한편, 이미경(2013)과 김보화 외(2018) 등의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였다.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미야자와 고이치, 1999; 이미경, 2012)"을 일컫는데, 한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에 대해 주목해왔다(허선주, 조은경, 2012). 이는 검찰 및 경찰·법률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미비한 법 규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사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된다.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현재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뚜렷한 원인 및 개선방향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련한 논의가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제도적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제도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제약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종설 외(2017)가 지원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서비스 평가 및 개선 요구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듯, 성폭력 피해 여성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을 묻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현 제도가 충분히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연구가설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연구의 관심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피해자가 말하기의 대상, 범위, 내용, 목적 등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 – 경찰에 신고하기(Reporting to police),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Help-seeking to agency) – 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를 주변인에게 말하기(Speaking-out to people around)의 양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험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 지원기관, (주변인)에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말하기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질적 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 면접(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법은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생생하게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질적 연구 기법으로서(Z.R. Milena et al., 2008), 연구 참여자를 해당 주제의 전문가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강점을 가진다. 그에 더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가 참여하는 심층 면접을 함께 진행하여 논의의 엄격성을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 말하기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종사자는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직접 섭외하는 방법과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다른 연구 참여자 소개를 의뢰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모집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약 60-90분간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서 모집한 피해당사자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3-1>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가운데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7인을 모집하였다. 나이와 직업을 기본정보로서 포함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당사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과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에는 강제추행, 성폭

행, 스텔싱,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이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률상의 명칭을 따르는 대신 피해 당사자가 인지하는 용어를 그대로 기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한 대상은 경찰, 변호사, 상담기관, 직장, 대학교 담당부서, 주변인(가족, 친구, 공적모임) 등으로 다양했다. 말하기의 방식은 대면 발화 외에도 전화를 하거나 SNS에 피해 사실에 대해 게재한 방식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지원기관 종사자 정보는 <표 3-2>과 같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가운데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4인을 모집하였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는 상담사, 경찰, 간호사, 변호사 등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본 논문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 진입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이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나, 어떤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담의 성격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학 배경을 가진 상담사들이 피해자들의 우울, PTSD 등의 임상적 증상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심층상담을 주로 진행하는 반면, 사회복지학 배경을 가진 상담사들은 미시·중시·거시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을 도맡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목표하는 제도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는 사회복지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종사한 3~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들이다.

<표3-1> 피해당사자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나이	직업	피해유형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한 대상
참여자1	27세	학생	강제추행	주변인(친구)
참여자2	25세	학생	성폭행, 강제추행, 스텔싱[2], 데이트폭력	변호사, 상담기관, 주변인(가족, 친구, SNS), 대학교 학생회 및 담당부서
참여자3	27세	직장인	강제추행	대학교 담당부서, 주변인(가족, 친구, 공적모임)
참여자4	30세	배달기사	강제추행, 성희롱, 데이트폭력	경찰, 상담기관, 직장, 주변인(친구)
참여자5	27세	직장인	강제추행	경찰, 주변인(친구)
참여자6	37세	직장인	강제추행, 디지털성폭력	주변인(친구, 공적모임)
참여자7	26세	학생	성희롱	주변인(친구)

<표3-2> 지원기관 종사자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나이	경력	지원기관 유형	업무
종사자1	43세	5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초기상담(intake), 상담사
종사자2	43세	6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속상담, 상담팀장
종사자3	33세	6년	성폭력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 지원
종사자4	28세	3년	성폭력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 지원

2) 스텔싱(stealthing):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거나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독일·스위스·캐나다·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를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스텔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2021년 11월 17일 스텔싱을 처벌 가능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표 3-3> 질문지

대상	질문 내용
당사자 심층면접 질문 예시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린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나요? •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려야 할지 고민한 사람이 있나요? • 피해 경험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요?
	• 경찰에 신고하기를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을 이용했다면,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원기관의 어떤 점이 개선되면 피해 사실을 말할 것 같은가요? • 외부의 피해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것 외에,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손실 등을 포함)
	•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활용)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하거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종사자 심층면접 질문 예시	• intake 상담 시에 피해자들이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한 피해자들이 신경 쓴다고 여겨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 최초 상담 이후 사례가 지원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각 경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자들을 상담할 때, 특히 염두에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한다면, 제도의 어떤 부분/절차에서 포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가요?
	•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활용)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원기관에서 하고있는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주제분석법의 갈래에 속하는 틀 분석(framewo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김인숙, 2016). 주제분석법은 심층면접, 표적집단면접, 현장관찰 등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에 대해 연구자가 일정한 주제의식(theme)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인데(Guest et al, 2011), 그중에서도 틀 분석은 질적 연구의 귀납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연역적 분석의 강점을 결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틀 분석은 자료 분석과정에서 두 가지 특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틀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개념에 대한 정의나 현상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규명하는 연구 문제에도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는다(허용창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을 밝히는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데에 귀납적 분석과 연역적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틀 분석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틀 분석의 분석 자료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전사자료가 그 바탕이 되며, 첫째, 자료에 친숙해지는 단계, 둘째, 이론적 분석 틀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 셋째, 분석 틀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넷째, 주제별로 자료가 재배열되는 단계, 다섯째, 자료의 개념, 패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체계를 도식화(mapping)해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를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Ritchie & Spencer, 1994: 178-187). 이러한 단계를 거쳐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면접의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나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경찰에 신고하기(Reporting to police),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Help-seeking to agency), 주변인에게 말하기(Speaking-out to people around)의 틀을 구성하고, 각 틀의 주제(theme)가 될 내용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이론이나 관련 선행연구를 확인하여 이론적 분석틀 및 주제를 검증하였다. 이후 주제별로 면접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였으

며, 배치된 자료가 갖는 의미를 통해 유기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도식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막는 요인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단계는 단선적으로만 수행되지 않고,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다시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이 반복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어 연구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지식화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특정한 '입장(standpoint)'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Harding, 1992).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성을 성찰하고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집단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학대 및 폭력피해와 같은 트라우마(trauma)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 과정 동안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Mordock, 2001)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Hart와 Crawford-Wright(1999)는 이때 만약 연구자가 상담가 훈련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면 민감한 주제에 접근하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였으며,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에서 2019년 사회복지실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경험이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김경희(2011)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에서의 인터뷰 쟁점과 전략을 정리하여 ‘인터뷰 지향과 목적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를 명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해 경험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 이후 말하기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드러내는 데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피해 상황 등을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은 질문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고지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 도중이라도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였다. 이외에도 녹취와 전사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고 면접 자료의 익명성 보장과 자료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윤리적 사안을 고지하는 등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

1.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3)]

1) 법적 공방의 변질과 과열

연구 참여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동반한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신고는 법제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시작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거나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과정을 비교적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112 신고 후 가해자를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던 참여자5는 경찰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 신고를 고민하였으나 신고까지 이어가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민을 한 부분에서 성폭력 법제도를 둘러싼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최근의 현상에서 핵심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많은 경우에 경찰 신고가 곧 지난한 재판과정에서의 '법적 공방'을 예고하게 되었고, 바로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법적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법적 공방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으레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섰다. 참여자4와 종사자1이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

3) 시장화: 상품으로서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 및 판매가 이루어지게 됨

소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사·성적 이력을 빌미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레퍼토리를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윤지영, 2018; 김보화, 2019).

> 경찰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로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되거나 처벌이 안되면 보복을 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흔히 들어봤으니까 주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4)

> 내가 사건 접수를 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이 가능한가,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 진행의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나. 성폭력 범죄의 증거는 사실 내 몸 안에 있는 증거가 없어지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또 **무고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분명히 나는 피해가 맞는데, 재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가장 많죠.** (종사자1)

> 피해자의 개인사까지 이렇게 막 파가지고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원래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과거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런 피해 상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종사자1)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성폭력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해자가 법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 있다. 성폭력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등의 다른 강력범죄와 다르게 '높은 불구속률과 불기소율', '관행화된 감형', '무고에 대한 의심', '재판부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는 판단' 등의 특징을 보인다(김보화, 2021). 그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지고,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덮을만한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김보화(2021)는 이를 틈타 등장한 성범죄 전담법인이 성폭력 가해를 변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추적하였으며, 성폭력 사건이 경제적인 것으로 편입되는 일련의 현상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로 설명한 바 있다.

가해자들은 성범죄 전담법인과 함께 법정 공방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역고소를 통한 공격, 강한 피해자 비난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일 때는 다양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끈질기게 종용하기도 한다. 일련의 행위는 법무법인의 '능력'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 사이에서 성폭력 재판 내 법적 공방의 필승 전략은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사는지'로 통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4와 1의 이야기에서도 성범죄 전담법인이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드러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최근 이러한 경향이 분명히 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불리한 것 아닌가,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 미투 이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너무 법적 공방을, 예를 들어서 안희정 사건이나, 서울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든 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태라든지,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든지의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봤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신고를 해봤자 불리한 거 아닌가,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종사자4)

가해자들이 지위와 권력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수록 가해자 전문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팀으로 딱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종사자1)

2) 법적 지원으로의 쏠림과 법적 결과의 불확실성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의료·법률·수사·보호·사회복귀 등에 걸친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행태로 인해 법적 공방이 변질 및 과열되면서 피해자들 역시 다른 것보다도 사법 절차 및 법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내에서도 상담·의료 등의 지원에 비해 법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지원기관 실무자들은 피해자들이 처음 연락을 취해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종사자1은 진입 단계 이후에도 상담시설 이용 기록, 전화 기록 등을 발급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을 지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요즘에 진짜로 법적 대응에 대한 욕구가 커지시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분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종사자3)

사실은 요즘 그런 게 많이 늘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처음 전화한 기록을 떼와라 이런 걸 변호사님들이 많이 시키더라고요. 상담 사실 확인서, 전화했던 기록 같은 걸 엄청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급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쏠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좀 강해졌다면 강해졌을 수도 있죠.** (종사자1)

피해자의 법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입이다. 종사자1이 언급한 것처럼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는 피해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법적 결과의 영향력이 커진 전반적인 상황은 법적 결과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3과 4는 법적 해결만이 곧 성폭력 사건의 해결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길고 힘든 소송 과정을 견딘다 해도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종사자4가 지적하고 있듯 사법 절차 끝에는 최협의설[4]을 기반에 두는 현행법의 명확한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다수다.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피해자 비난 전략 등이 법정에서 용인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김보화, 2021). 이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절망감과 실망감을 초래하는데, 지금과 같이 법적 결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피해자는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종사자들은 마땅히 정당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성폭력 사건 해결이 무조건 법적 대응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상담을 통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재판을 이기면 이렇게 회복이 확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사자1)

4) 최협의설: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성폭력 사건 해결이 법적 대응의 어떤 결과로만 나타내지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피해자들이 느끼는 굉장한 절망감과 실망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 해결을 할 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하지만 이 성폭력 사건 해결이 무조건 법적 대응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4)

2.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

1)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

어쨌든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사법 절차 및 법적 결과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이 적극 연계하고 있다고 대답한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에는 피해자가 사건 신고 후 피해 진술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이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범죄 피해자의 보호의 목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온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에 해당한다(김성돈, 2002; 정현미, 2012).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들이 시장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타개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해자들은 법률 지원제도, 특히 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신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2는 법률 구조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었지만,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해서 사선 변호사

를 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여러 사례를 목격한 종사자들도 지원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 2가 언급한 접근성과 적극성 등의 문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여러 차례 국선변호인 제도의 한계로 지적하였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강동욱, 2014; 전명길, 2018).

> 국선 변호사 솔직히 믿음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변호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지도 알 수 없으니까 내 사건을 열심히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해자들은 비싼 돈 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안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선 변호사를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2)

> 저희가 최근에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가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처음 조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고 사전에 변호사와 소통과 자문을 통해서 나름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시는데, 국선 변호사와 일정이 안 맞거나 진술 전에 안내가 잘 안돼서 변호사 없이 초기 진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국선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아쉬움들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요.** (종사자2)

2) 사적 대응의 증가와 계층화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사선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참여자2의 사례처럼, 종사자1은 사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사자4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사설 법인의 변호

사 수임 비용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법률 지원제도 내에서도 사설 법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선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의 사적 대응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은 뚜렷해지는 것이다.

> '국선 변호인은 믿지 못하겠다, 평이 별로 좋지 않더라' 하면서 처음부터 사선 변호인 로펌에 가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국선 변호사 제도를 진행하시다가 내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이지 않고 해주는 게 없다고 하면서 중간에 사선 변호사를 사시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정확히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사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종사자1)

> 국선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수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라고 2010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가끔 사례 중에는 **'그냥 이렇게 지원받는 것보다는 사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서 좀 무리하셔서 변호사 수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는 국선 변호사 제도로 안내를 하고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오히려 역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잡할 때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종사자4)

그러나, 이러한 사적 대응은 피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적 대응은 피해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 피해자는 비용을 들여 사선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고, 단순 금액 부담뿐만 아

니라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긴 과정을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면서 버텨야 한다. 이렇다 보니 종사자1의 지적처럼 피해자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종사자1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와 그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원이 없는 피해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7은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 제가 성폭력 피해를 마주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안전망이 이 상황에 있는 대응을 판단하는데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가정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백업 플랜이 없었어요.** (참여자7)

> **사실은 로펌의 사선 변호인들이 비싸잖아요. 사선 변호인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 또한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심지어 대출 받아서 사선 변호인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내가 이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 에서 오는 불안감이죠.** (종사자1)

> 물론 변호사 비용이 천차 만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제공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일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시장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종사자2)

3.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

1) 경찰의 신고 및 수사 개시 방해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 경험한 2차 피해에 대해 토로하였다. 정혜욱(2018)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해 '형사절차 개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사법 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구분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경험을 명료화 한 바 있다. '형사절차 개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신고 자체를 막아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경찰·검찰 수사·공판 등의 각 단계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매번 다시 떠올리게끔 하거나, 사건 자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경찰 신고 과정에서 경험한 2차 피해는 특히 형사절차 개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해당하였다.

참여자5는 강제추행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후 피해 진술까지 마쳤으나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범행 사실 부인으로 인해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는 무리가 있는데, 참여자5의 피해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이었기 때문에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설령 물적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며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자5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범죄에 관한 전화가 오는 등 이런 일이 많다"고 말하며, 참여자5의 신고 의사를 무마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5는 사건 대응의 진행을 결국 중단하게 되었다.

가해자를 잡기까지 한 상황에서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왔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가해자)이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 이런 일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개씩 전화가 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해자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건가? 귀찮다는 뜻인가?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러냐, 강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라는 뜻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역시나 신고를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5)

성폭력 상담 현장 현황을 살펴보면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의사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이런 건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이미경(2012)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3천여 건을 분석하여 쓴 연구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 결여나 담당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여 사건 당시 신고·고소를 시도했지만 다시 침묵 상태로 돌아간 사례들이 많음을 비판하였다. Johnson(2017)은 캐나다 지역에서 성폭력 생존자의 경찰 신고 결정과 일선 경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 분석을 한 결과, 경찰이 피해자의 경험을 축소하고 '이상적인 피해자(ideal victims)'나 진짜 강간(real rape)'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폭력 생존자들의 피해 신고를 '무효화'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이러한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는 그 당시의 성폭력 사건의 국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참여자5가 일련의 경험을 통해 '역시 성폭력 신고를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이후의 성범죄 사건 대응에도 영향

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여자 3, 4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4는 경찰에 자신이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수사 상담을 한 적이 있지만, 경찰관의 부정적 반응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자신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참여자3은 집 근처에서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지만, 경찰관의 대응에 실망감을 느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 경찰에 전화를 해서 수사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증거가 없니 뭐니 하길래 결국 신고는 안했어요. 경찰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참여자4)

> 한번은 집 근처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분에게 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걸 목격하게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고를 했을 때 분명히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와서 남자분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여자분이 걱정도 되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소용이 없는데 그럼 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참여자3)

제 2 절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의 제도적 제약

1. 지원기관 접근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영향

그렇다면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지원기관의 접근성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기관의 낮은 접근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었으며(이미정 외, 2013; 전종설 외, 2014; 전종설 외, 2017), 3회에 걸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꾸준히 높게 꼽힌 문제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지원기관 제공 정보의 한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관련 기관에 대해 알지 못할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찾는 방법은 종사자4의 말처럼 '인터넷 검색'이다. 그러나 이미정 외(2013)는 현재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지원기관을 검색하였지만 검색을 통해서도 지원기관을 쉽게 찾지 못했던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기관의 홈페이지나 홍보 팜플렛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 참여자1과 5는 각각 '각자의 피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보가 도움 되지 않음'과 '기관의 특성이 구분되지 않음'을 들었다.

> 저희 상담소에 연락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왔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종사자4)

> 검색했을 때 관련 기관이 맨 위에 뜨는 것도 정말 많은 노력의 결과겠지만, 그리고 팜플렛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걸 봤을 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에 대한 상황도 다 다를 거고.** (참여자1)

> 기관들마다 어떤 피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각각 이렇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만 봐서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참여자5)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기관 제공 정보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포털사이트에 '성폭력', '성폭력 피해' 등의 단어를 검색해보았다. 검색 화면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포털사이트 '성폭력' 검색 화면

최종 검색일자: 2021.11.11.

포털사이트에 ‘성폭력’이 들어간 단어를 검색하였을 때 검색 화면 가장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는 ‘안전Dream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로, 성범죄뿐 아니라 실종아동, 청소년·학교폭력, 가정폭력·학대 등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는 경찰지원 종합 홈페이지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성폭력의 개념과 함께 신고·처벌 기준, 참고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처벌 기준은 별도의 설명 없이 관련 법률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24개의 참조사례는 가장 최신의 게시글이 2011년도에 게재된 것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맞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털사이트에 ‘성폭력’이 들어간 단어를 검색하였을 때 검색 화면에 뜨는 정보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 문구와 함께 여러 상담 및 지원기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링크다. 첫 번째로 안내된 여성긴급전화 1366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다시 한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의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원기관에 대한 단순한 정보 노출을 반복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용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많은 기관이 나열된 가운데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여 필요에 맞는 지원기관을 찾기는 힘들었다.

2)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로의 노출

<그림 4-1>과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성폭력’을 검색했을 때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바로 밑으로 성폭력 관련 광고가 게시되는 ‘파워링크’가 있

었다. 한 화면에서 10개 가량의 법무법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광고 키워드로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경찰/검찰지청장/부장판사 역임변호사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에 조력한다는 키워드를 걸어놓은 법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광고를 보고 정말 화도 많이 났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진이 빠졌어요.** 포털 사이트들도 지금 돈 받고 여기에다가 성폭력 상담소 이런 연락처랑 성폭력 예방 캠페인 해놨으면서 거기 바로 밑에 이런 광고 해놓은 게 말이 됩니까. (참여자2)

> **성범죄를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범행을 한 사람을 위한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광고를 하고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보니까 자기들 법무법인 홍보용 블로그에다 써놨던데요?** 진짜 자기들 얼굴 걸어놓고 이런 짓 하고 싶을까 너무 화가 나요. (참여자4)

>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성폭력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라, 성추행 가해자 처벌 이런 식으로 검색했는데 무슨 인터넷 카페가 뜨는 거에요. 그 **성추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 모여서 이야기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법무법인들이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참여자5)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광고를 "기업의 관리하에 있는 활동이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설득적 커뮤니케이

션(Cohen, 1972)”이자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유료의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Wells et al, 1989)”으로 정의한다(김재휘 외, 2009). 특히, 이들은 광고를 정보적 도구라기보다 설득적 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Scott, 1917). Scott(1917)은 광고는 소비자의 심리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품에 대한 욕망을 스며들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적용하면 검색 화면에 뜨는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는 단순히 가해 변호 법무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서비스는 온당한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법무법인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피해자들이 “화가 나고 저절로 진이 빠졌다”고 말한 것은 그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표현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2007년, 국내 법무법인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광고 규정을 완화한 것이 있다. 당시 법무법인들의 온라인 광고는 특히 이혼과 성범죄의 영역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현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보화(2021)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이혼과 성범죄 영역은 아는 사람한테 말하기 창피하거나 남사스러워서 모르는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가 온라인 홍보의 형식으로 활성화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기업인, 사업가들처럼 소송을 자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처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들이 없고, 다른 건설·의료 등의 분야처럼 입소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뢰가 아닌 광고가 유일한 접근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법무법인에게는 가해자 변호 광고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틈새시장을 노린 전략일 수 있었겠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참여자2의 인용구 말미에 언급된 것처럼, 제대로 된 지원기관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원기관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접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건 나오지만 **피해자가 이런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잖아요. 성교육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해봐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 정도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향한 온갖 유해한 말들과 그리고 이런 광고들.** (참여자2)

2. 지원 기준에 대한 검열

1) 피해자의 자기 검열

연구 참여자들은 지원기관의 지원 기준이나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피해 정도에 대해 검열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참여자1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나 정도의 피해로도 괜찮은 걸까?'라는 물음에 가로막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준은 강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당장 대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여자1처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신고나 고소 등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참여자3은 지원기관에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이처럼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피

해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따로 심리상담을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3은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외부 병원에 찾아갔고, 참여자2는 피해 당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여력이 없어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사설 상담소를 이용했다고 대답했다.

> 홈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을 무한정 해줄 수도 없을텐데** 당장 갈 데가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필요할 거잖아요. (참여자1)

> **강제추행 정도였고, 외국에서의 피해였고,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책이나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혼자서 견뎌야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공황장애가 심하게 찾아와서 외부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참여자3)

>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 알아보고 얘기하고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사설 상담소를 이용하는 비용이 꽤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다행히 집에서 지원해주셨어요. (참여자2)

2) 지원기관의 검열

종사자들은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가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

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종사자1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원기관 내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피해라고 여겨지는 성추행 등의 사례가 지속상담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종사자4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경찰 신고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실재함을 짚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자기 검열을 우려만으로 보기 힘들다.

>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요. 사실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힘들고 안 힘들고를 나누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강제추행이어도 힘들면 오세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인력 풀이 한정이 돼 있고 워낙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지속상담까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종사자1)

> **저희 기관에서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증거 채취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지말지 망설일 때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사자4)

3. 지원기관의 업무 과중화

오랫동안 지원기관의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만큼, 종사자들에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지원기관 홍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사자3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상담소에 근무했을 때 매년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시청의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지원기관 홍보물을 배부하였다고 대답했으며, 종사자2는 지원기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교 축제 기간에 맞추어 대학교 내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원기관의 우선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특히 종사자1과 2는 최근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공백에 대한 대비 없이 관련 기관이 우수수 운영을 중단하면서 근처에 있던 지원기관의 피해 지원 업무가 더 과중해진 위기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 제가 예전에 일했던 상담소는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진짜 홍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시청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해서 리플렛을 드리고, 이런 상담소가 있다 좀 알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역이라서 내담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쪽에 있는 상담소에서는 그런 식의 홍보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종사자3)

>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마무리하시면서 평가하실 때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축제 기간에 저희가 한 부스를 맡아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근처에 있던 해바라기센터 2개가 문을 닫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바빠졌거든요.** (종사자2)

> 해바라기센터는 병원에서 더이상 위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작년에 이미 하나가 없어졌는데, 최근 또 하나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병원에서 더이상 하지 않겠다 해서 곧 없어져요. (종사자1)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기관이 홍보 업무까지 분담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적일 때에 지원기관은 피해자 지원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원기관의 인력·예산 등이 열악한 상태임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전종설 외, 2014). 이에 종사자2가 '4자 협약'의 주체를 호명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의료기관의 4자 협약에 기반하여 설립된 지원기관이다. 그러나 4자 중 어느 곳도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상부 조직이 지원기관의 접근성 증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함에 따라, 이는 지원기관의 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로, 피해자에게 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책임 소재를 찾는 경우에는 4자 협약이지만 이 4자가 슬쩍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들이 각자 홍보를 해서 하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힘들거든요**. 엄연히 우선순위로 따지면 피해자 지원이 훨씬 더 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4자 협약에 관련된, 더 윗선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되고 있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종사자2)

4. 기타 기관에서의 지원 경험

한편,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가지 못했더라도 대학교 내 담당 부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말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참여자2와 참여자3은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담당 부서를 찾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2는 학과 학생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떠올려 총여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총여학생회를 통해 성폭력 사건 대응을 지원하는 교내 성평등센터에 닿을 수 있었다. 성평등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3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자원, 심리상담센터 등을 연계하였다.

학과 학생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이런 거를 담당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총여학생회를 통해서 교내 성평등 센터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성평등센터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었고, 심리상담센터로 연결해주셔서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참여자2)

학생회, 과 사무실 여러 군데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인권센터에 얘기를 해봐라 해서 인권센터를 찾아가게 됐어요. (참여자3)

물론 대학교 내 담당 부서를 찾아간 것이 모두 성폭력 사건 대응 절차를 성공적으로 밟을 수 있게끔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3은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지만,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결정적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교내 관련 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담당 부서를 확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과에 매진하는 기관이었을 뿐 공간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이영애, 2012). 이에 2020년 6월 기준, 82개의 대학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를 담당케 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2017년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중에 있다(김은희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대학 내 인권센터가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볼 만하다. 미국은 1986년, 한 여대생이 교내 기숙사에서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대학안전법(Jeanne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은 성폭력을

포함한 대학 범죄율을 공개해야 하고, 성폭력 정책 마련·교원훈련·신고 및 처리 실행절차·피해자 구제제도·가해자 조사 및 처벌제도·예방대책·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의무화한 성폭력 사건 처리 표준지침을 따라야 한다. 덕분에 현재 미국의 대학교 내에는 교내 성폭력 상담소(Relationship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center)를 중심으로 성폭력 조사위원회,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hot-line), 교내 개별 성폭력 평가조직, 전국단위/학교별 AAU(The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춘 덕분에 다양한 성폭력 사건들이 교내에서 신고·처리되고, 피해자가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연계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학교나 직장 내 담당 부서와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서가 거의 없을 때에는 조직 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나, 관련 부서가 생긴 이후에는 협력을 통해 훨씬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몇 년 전에 어떤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상황 판단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했고, 저희가 의견서도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퇴학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대학 상담센터, 인권센터같은 유관 기관들과 협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직장 내 사건도 직장에 그런 기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종사자2)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조직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직장 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에서 보였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3)

제 3 절 제도 밖에서 주변인에게 말하기

1.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주변인의 지지

제도의 공백에서 갈 길을 잃거나 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겪는 동안, 제도 밖의 주변인의 지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Ullman(2000)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생존자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들의 치유 및 회복을 사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주변인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했다.

참여자3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에 대한 경찰 신고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경험이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위로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한 경험'을 회복의 동력 삼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참여자2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얻은 사례였다.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휴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어머니가 함께 울어준 것과 더불어 전적인 지원을 해준 덕분에 심리치료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참여자2가 자신을 지지해준 어머니로부터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되새길 수 있었다는 언급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피해자의 잘못이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낙인의 고리가 끊어진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찾지 않을 테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자체는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해줬던 거. 고마웠다고 얘기해 준 거나 몰랐다고 얘기한 거나 그런 게 다 어쨌든 동력에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3)

휴학을 해야 했어요. 말했던 순간의 분위기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저랑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원을 받으면서 정신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 어머니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왜 자책을 할까 생각했는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2)

피해자들은 주변인의 지지에 힘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함으로써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 힘을 싣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각한 이후 이를 넓은 대상에 알리는 데에는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미정 외, 2013)"의 목적이 존재한다. 미투 운동 이후의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 운동에서 이러한 '연대의 목적'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이나영, 2018; 김애령, 2019).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에서도 이런 목적이 명확히 드러났다. 참여자3은 자신의 여동생을 예로 들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를 위해 참여자3은 친밀한 관계의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모임에서도 발표의 형태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한 경험이 있었다. 참여자5는 신고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음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를 한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참여자2도 성폭력 사건 대응 절차를 밟은 경험을 듣기가 쉽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은 목표한 대로, 다른 피해자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며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제도로 연결해주는 지지망이 되고 있었다.

> 계속 얘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는 나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겪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에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그런 걸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나부터 조금 더 말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 저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을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얘기를 해줘요. 꼭 포기하지 말고 신고를 해서 처벌 받게 하자고. 이런 **성공적인 경험담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5)

> 저는 SNS에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꾸준히 올렸어요. 어떻게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 올렸을 때 바로도 연락이 많이 왔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글을 떠올리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네가 다니는 학교도 찾아보면

비슷하게 상담센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여러 지원기관을 소개해주면서 이런 곳에서 상담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참여자2)

2. 또 다른 외상을 남기는 주변인의 반응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존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반응은 피해자 비난, 가해자 두둔, 소문, 집단 따돌림 등이 있다(미야자와 고이치, 199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족, 친구, 지인 등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을 때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배반외상(betrayal trauma)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Freyd, 1994; 박윤경, 안현의, 2021). 참여자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반응은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하는 정신적·사회적 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외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후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인에 함구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참여자6은 각기 다른 모임에서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가해자와 함께 속해있던 모임에서 성폭력 피해가 생겼을 때 참여자6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주변인들이 가해자를 감싸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가 있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알릴지에 대해 6개월 가까이 고민을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자신이 그 모임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해자와 잘 지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에는 더 망설이고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던 모임은 정말 좋아하는

모임이었고 즐겁게 활동을 하다가 못하게 된다는 게 싫어서 6개월 정도를 말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더이상은 마음이 괴로워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임 사람들에게 알렸고, 알리는 순간 잘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 발로 나왔어요. (참여자6)

참여자4는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참여자4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두둔했던 관리자는 이후 이를 빌미로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아 참여자4에게 결국 해고를 통보했다.

참여자4는 그다음에 근무한 다른 직장에서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문제를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것에 피로감을 느껴 퇴사 후 혼자 일할 수 있는 '배달기사'로의 이직을 선택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자에게 말했었는데 2차 가해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를 문제를 키운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 같아요. 이후에 진상 손님과 트러블이 생긴 일로 트집을 잡아서 저를 잘랐어요. 그때 '이번 일도 있고' 이러면서 제가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녔던 여러 직장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후에는 그냥 혼자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참여자4)

한편,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자가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노출될 때 배반외상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1은 지원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종사자4는 지원기관에서 자신의 주변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일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난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피해자가 “엄마한테 말하면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와 따로 상담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부모 교육이 상담과정의 루틴으로 딱 있어요. 부모 말고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주변 인물들을 한번씩 상담을 해요.** 피해자들의 회복에 정말 결정적이거든요. (종사자1)

> 저희 상담소에는 상담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성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도 있는데요. 사실 막연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만약 **내 주변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될지, 내 주변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걸 교육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종사자4)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약 조건을 개선해낼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도에 알리는 과정을 '경찰에 신고하기'와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하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를 '주변인에게 말하기'의 양상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신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은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의 한계' 및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란 '성폭력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성범죄 가해 변호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연구결과 최근 가해자와 성범죄 전담법인이 자본을 매개로 결탁하여 피해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이유로 법적 공방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법적 공방의 내용은 무고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개인사·성적 이력 활용 등으로 성범죄 전담법인을 등에 업은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전략이다. 이는 가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지와 상관없이 역고소를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사를 공개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김보화, 2021). 또한, 가해자들의 행태로 인해 법적 공방이 변질 및 과열되면서 피해자들은 사법 절차 및 법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성

폭력 피해 지원기관 내에서도 상담·의료 등의 지원에 비해 법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법제도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적 결과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현재의 성폭력 법제도가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게 만든 책임이 있다.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 남아있는 법제도가 만들어놓은 틈이 자본의 침투를 허용해온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법의 테두리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제도적 해결의 장이 아닌, 자본으로 쌓아진 법적 공방을 비호하는 경계로 전락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적 대응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법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한 피해자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커진 피해자들의 대응이 탈제도화·개인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성 욕구 등이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권력의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화와 개인화가 가속화된다면 권력과 자본의 열위에 있는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사적 대응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성폭력 사건 대응이 계층화되고 있다는 점은 점차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고립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현재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와 그가 초래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필요성을 통감하며 시급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관측 결론' 문서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이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비판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직접적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를 가능케 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꼽은 것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였다. 초기 신고 시 경찰의 대응은 이후의 성범죄 사건처리 과정과 피해자의 지원기관에의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고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신고 이후의 과정이나 재판 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지원기관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이미정 외, 2013)'는 하나하나가 성범죄 신고율 및 기소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 과정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해 피해 사실 신고 및 수사 개시를 직접적으로 방해받고 있었다.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2차 피해의 경험이 이후의 성폭력 신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현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를 무마시킬 뿐 아니라, 경찰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다.

다행히도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명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경찰 등에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귀형, 박종철, 2018).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개선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이렇게 개선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의 접근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 피해자들은 지원기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기관 접근의 한계에 부딪혀 필요한 지원 자원을 찾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도하지만,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보를 피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지원기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성폭력 가해 변호 광고가 가득한 화면이기도 했다.

접근성 강화 대책 마련에 앞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은 모든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게이트웨이(gateway)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곳에 가면 된다'는 정보가 직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지원 사례를 제공하고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공 웹페이지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활용[5]하여 '자원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 변호 광고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을 때, 포털 사이트의 광고 노출 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단일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포털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지 않지만 인터넷포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이승선, 2010; 박성용, 오동현, 2015). 예를 들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자 2021년 8월 26일, 사건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섹션 단위뿐 아니라 개별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언론사 한겨레는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에 대해 개별기사 댓글 창 닫기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5) 「웹 접근성&웹 표준 완벽 가이드(Jim Thatcher et al, 2011)」 참조.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한겨레, 2021.11.17.).

또 다른 측면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기관의 지원기준이 명확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검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단순히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에 연락하기를 주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해의 경중과 경찰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스스로의 피해를 검열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응 의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인터뷰에서 지원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힐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벼운 수준이거나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여부가 불확실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지원기관의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상조직 내 성폭력 담당 부서를 확충하여 성폭력 지원체계의 중간조직 또는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접근성 제고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대부분이 개인 대 지원기관의 구도로 이루어져있지만, 학교·직장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조직에 관련 부서가 자리잡는다면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지원기관의 존재를 찾을 수 있게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지방의 대학교, 작은 규모의 사업장 등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결국 피해자들이 지원기관 도움요청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핵심은 현재 지원기관 및 지원 서비스의 열악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위에서 나열한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체는 지원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라 상위 조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지원기관 업무의 과중화로 인해 피해 지원 업무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으며 홍보 업무 등에 기울일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원기관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상위 조직이 이러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지원기관 등의 제도 내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경험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 밖에서 주변인에게 말하는 경험을 살펴본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제도 내에서는 시장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탈제도화·개인화의 경험을 하였지만, 제도 밖의 피해 경험 말하기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주변인의 지지를 통해 치유와 회복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을 싣고자 하는 목적의 말하기로 이어지면서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커다란 지지망을 형성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주변인의 반응이 또 다른 외상을 초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침묵의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여,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변인과의 역동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부분을 강화하거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종사자들이 언급한 '주변인 교육'의 활성화와 '2차 피해'에 관련된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제도적으로 포섭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도적 제약' 양상의 핵심은 '조직배반(institutional betrayal)' 이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조직배반 이론은 Freyd(1994)가 친밀한 대상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배반외상(betrayal trauma) 이론에서 배반외상을 초래하는 주체를 학교, 회사, 정부 등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공식적 제공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Smith와 Freyd(2014)는 한 대학생이 성폭행을 신고한 뒤 주변인의 괴롭힘과 무감각한 수사 관행에 부딪혀 자살한 사건을 예로 들며 배반외상을 초래하는 조직의 행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조직배반의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조직배반은 조직이 취하는 행위에 따라 조직이 적극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작위(Comission)와 조직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부작위(Ommission)으로 구분된다.

이를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여 해석한 김지은과 안현의(2021)는 작위는 조직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조직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 부인, 피해자 공격,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꾸기 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작위는 조직이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등이 예가 된다고 보았다.

현재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둘러싼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 개시를 방해하거나, 사법기관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태를 방치하는 작위와 무작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성폭력 신고율 및 지원기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지원제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지원제도가 개인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배반외상을 입은 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아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가 외상으로부터 치유되고, 조직배반이 아닌 조직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개선 의지가 촉구된다.

강한 개선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저울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다. 거기에다 성폭력 법제도의 시장화가 가속화된다면, 거칠게 말해 시장의 법무법인에게 가해자는 '이윤'이지만, 지원기관에게 피해자는 '비용'으로 치환될 것이다. 지원기관의 접근성 제고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내려놓기 힘들다. 근본적으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년에 걸쳐 연구 및 실천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일례로 성폭력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예산은 지원체계를 현상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끔 하는 근

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나열한 경험은 많지만,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이후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지원을 받았고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비용을 투자해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어려움을 개선해낼 방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경험을 담아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논의는 법적·여성학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겪는 제약을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사회복지학계 내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 및 성폭력 피해자 회복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의 연령과 피해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참여자가 2-30대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 유형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성폭행을 경험한 참여자는 7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유형화 한 최지현 외(2019)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까운 사람에 의한 심각한 성폭력, 업무상 아는 사람에 의한 희롱과 추행, 30세 이후의 심한 성추행, 모르는 사람의 가벼운 추행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심각한 성폭

력의 사례는 1건에 그쳤고, 30세 이후의 심한 성추행의 사례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가 중할수록 성폭력 피해가 보고되는 비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피해 유형에 따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이 다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관련한 질문을 하였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에 따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Ullman 외(2006)가 지적했듯,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피해 유형, 피해 시점, 가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특성과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피해 유형만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질문했을 때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Masters 외(2015)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 각각의 영향에 주목하기보다 피해경험의 총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연령이나 피해 유형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제도에 닿지 않는 이유는 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측면, 성폭력 통념의 낙인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감소하였더라도 여전히 성폭력 피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사회문화적 인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제약에 대해 비교적 강조되지 못했던 제도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분석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강동욱. (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 개선방안. **법학연구, 17**(1), 1-35.

김경희. (2011).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수행에서의 인터뷰 쟁점과 전략.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1), 5-25.

김난도. (1997). 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6**(1), 127-151.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5**(3), 117-139.

김성돈. (2002).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10**(2), 123-142.

김보화. (2018).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시민과세계**, 183-197.

--------.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19**(2), 3-43.

--------. (2021).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성폭력 피해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피해자학연구, 25**(2), 89-121.

김보화, 허민숙, 김미순, 장주리. (2018).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연구보고서 2018-16.

김애령. (2019). 책임의 연대 - '#미투' 이후의 과제. **여성학연구, 29**(1), 139-165.

김은희, 김채윤, 김형완, 신동선, 이명희, 양혜정, 임소진. (2020). 대학 인

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사)인권정책연구소.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405, 집문당.

김재엽, 이순호, 최지현. (2011). 성인남성의 음란물 집착, 강간통념 수용과 성폭력 가해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 65-92.

김재휘, 박은아, 손영화, 우석봉, 유승엽, 이병관. (2009). 광고심리학.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한민국:서울.

김정혜. (2020).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KWDI Brief, 53**, 1-9.

김종성. (2002).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13,** 59-82.

김지은, 홍해숙. (2016).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5**(1), 107-128.

미야자와 고이치. (1999). 피해자학 입문. 장규원(역). 길안사.

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123-146.

박상민. (2020).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20**(1), 343-372.

박성용, 오동현. (2015). 광고매체로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광고법상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6**(1), 69-87.

박윤경, 안현의. (202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19-34.

법무부. (20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http://www.moj.go.kr/cvs/index.do 에서 출처.

소병철 의원실 보도자료. (2021). 국내 최초 '스텔싱처벌법' 법사위 상정.

(2021.11.17.).

송윤아. (2014). 지역사회의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5**(4), 415-444.

송주영, 송태민. (2007). 성폭력 신고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2**(1), 85-96.

성정숙, 이나영. (2010).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2**(2), 349-373.

심혜선, 김지현, 전종설. (2015). 성폭력 피해자들의 귀인양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5**(2), 287-314.

여성가족부. (2010).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0.8.1.).

----------. (2013). 「성폭력 실태조사」.

----------. (2016). 「성폭력 실태조사」.

----------. (2019). 「성폭력안전 실태조사」.

----------. (2021).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1.do 에서 출처

윤지영. (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 모색: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175-202.

이권능. (2018). 성범죄의 현실과 관련 통계의 한계. **The Tomorrow Issue Paper**, 2018-07.

이귀형, 박종철. (2018).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예방책 모색: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질적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233-260.

이나영. (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

간복지동향, 234, 5-12.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23**(2), 43-75.

----------. (2018). 미투(Me 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경제와 사회**, 12-35.

이미정, 변화순, 황정임, 이소영. (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이인선, 김기현. (2013).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이승선. (2010). 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400-437.

이영애. (2012). 미국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대학안전법(Clery 법)의 한국 적용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64**, 283-306.

이지연, 강지연, 이인숙. (2008).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있어 수치심과 낙인의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1), 23-47.

전명길. (2018).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6**(2), 9-25.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 (2021).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2**(1), 97-138.

전종설, 심혜선, 신선아. (20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건사**

회연구, 34(3), 505-537.

전종설, 심혜선, 김지현. (201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2), 273-303.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정현미. (2012).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이화젠더법학, 4**(1), 73-95.

정혜욱. (2011). 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 신고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35**(2), 115-137.

-------. (2018).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법학연구, 18**(3), 55-88.

채현숙. (2016).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8**(1), 117-140.

최지현, 김기현, 김재엽. (2019).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형화 연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4), 271-296. 가족과 문화 31(4), 61-88.

최혜정. (2018).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자발적 사건폭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41**, 151-174.

한겨레. 2021. “네이버에 뜬 ‘한겨레’ 성범죄 기사 댓글창 닫습니다”. 2021.11.17.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한국여성의전화. (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https://www.stop.or.kr/html/kor/support/intro.html 에서 출처.

한정수, 조성진, 배승민. (201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6**(3), 176-182.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33**(3), 1-31.

허선주, 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20**(1), 381-415.

허용창, 한경훈, 김동진, 문혜진.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사회복지정책, 47**(1), 143-167.

홍미영, 박지영. (2019).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1-173.

황지태. (2010).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 21**(3), 7-51.

Bachman, R. (1998). The Factors Related to Rape Reporting Behavior and Arrest: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1), 8-29.

Barrett, C. (2018). To report or not report: The influence of framing on sexual assault decision-mak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yoming, US.

Battaglia, T. A., Finley, E., & Liebschutz, J. M. (2003).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peak out.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8*, 617 - 623.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3), 579-616.

Belle Liang, Lisa Goodman, Pratyusha Tummala-Narra, & Sarah Weintraub. (2005).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lp-Seeking Processes Among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2),

71-84.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1995). The epistemology of pure sociology. *Law & Social Inquiry, 20*(4), 829-870.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 187 - 249). Jessica Kingsley Publishers.

Brownmiller, S. (200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75). In R. K. Bergen, J. L. Edleson, & C. M. Renzetti, *Violence against women: Classic papers* (p. 5 - 8). Pearson Education New Zealand.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Campbell, R. (2008). The Psychological Impact of Rape Victims. *American Psychologist, 63*(8), 702-717.

Carli, L. L. (1999). Cognitive reconstruction, hindsight, and reac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8), 966-979.

C. Spencer, A. Mallory, M. Toews, S. Stith, & L. Wood. (2017). Why Sexual Assault Survivors Do Not Report to Universities: A Feminist Analysis. *Family Relations, 66*(1), 166-179.

Chon, D. S. (2014). Police reporting by sexual assault victims in Western and in non-Western countr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9*(8), 859-868.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T. (1996). Mediators of the long-term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Perceived stigma, betrayal, powerlessness, and self-blame. *Child*

Abuse & Neglect, 20(5), 447-455.

Cohen, D. (1972). Surrogate Indicators and Deception in Advertising. *Journal of Marketing, 36*(3), 10-15.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Diana L. Payne, Kimberly A. Lonsway, & Louise F. Fitzgerald.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1), 27 - 68.

F. Rabiee.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4), 655-660.

Ferris, J. M., & S. Y. Tang. (1993). A SERIES ON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An Over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1), 4-10.

Finkelhor, D., & Browne, A. (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conceptu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4), 530-541.

Freyd, J. J. (1994). Betrayal trauma: Traumatic amnesia as an adaptive response to childhood abuse. *Ethics & Behavior, 4*(4), 307-329.

Goudriaana, H., Lynch, J. P., & Nieuwbeert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4), 933-969.

Goudriaan, H, Wittebrood, K., & Nieuwbeerta, P. (2005).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hesion,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719-742.

Guest, G., MacQueen, K. M., & Namey, E. E. (2011). Applied thematic analysis. sage publications.

Harding, S. (1992).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 What is "Strong Objectivity?". *The Centennial Review, 36*(3), 437-470.

Hart, N., & Crawford-Wright, A. (1999). Research as therapy, therapy as research: Ethical dilemmas in new-paradigm research. *British Journal of Guidence & Counselling, 27*(2), 205-214.

Hunter, Sally V. (2011).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as a Life-Long Process: Implications for Health Professional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2*(2), 159-172.

Hershkowitz, Omer Lanes, & Michael E. Lamb. (2007). Exploring the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with alleged victims and their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31*(2), 111-123.

Jim Thatcher et al. (2011). 웹 접근성 웹 표준 완벽 가이드: 국가표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웹 콘텐츠 개발. 에이콘출판.

Johnson, H. (2017). Why doesn't she just report it? Apprehensions and contradictions for women who report sexual violence to the police.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9*(1), 36-59.

Kathryn L. Norsworthy, & Ouyporn Khuankaew. (2004). Women of Burma Speak Out: Workshops to Deconstruct Gender-Based Violence and Build Systems of Peace and Justice.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9*(3), 259-283.

Katz, S., & Mazur, M. A. (1979). *Understanding the Rape Victim: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NY:plenum.

Lizotte A. (1985). Uniqueness of rape: Reporting assaultive violence to the police. *Crime and Delinquency, 31(2),* 169-190.

L. Manikonda, G. Beigi, H. Liu, & S. Kambhampati. (2018). Twitter for Sparking a Movement, Reddit for Sharing the Moment: #metoo through the Lens of Social Media. arXiv preprint arXiv:1803.08022.

Marks, D. F., & Yardley, L. (2004). *Research methods for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Sage.

Masters, N. T., Stappenbeck, C. A., Kaysen, D., Kajumulo, K. F., Davis, K. C., George, W. H., Norris, J., & Heiman, J. R. (2015).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examining heterogeneity and subgroups among survivors of sexual assaul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3), 685.

Marudan Sivagurunathan, Treena Orchard, Joy C. MacDermid, & Marilyn Evans. (2019). Barriers and facilitators affecting self-disclosure among 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The service providers'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88*, 455-465.

Michelle Fugate, Leslie Landis, Kim Riordan, Sara Naureckas, & Barbara Engel. (2005). Barriers to Domestic Violence Help Seek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Violence Against Women, 11*(3), 290-310.

Mordock, John B. (2001). Interviewing Abuse and Traumatized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2), 271-291.

Hart, N. & Anne Crawford-wright. (1999). Research as therapy, therapy as research: Ethical dilemmas in new-paradigm research.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7*(2), 205-214.

Nicole M. Overstreet, & Diane M. Quinn. (2013). The Intimate

Partner Violence Stigmatization Model and Barriers to Help Seek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1), 109-122.

Norris, J., & Feldman-Summers, S. (1981). Factor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rape on the victi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6), 562 - 567.

Ritchie, J., & Spencer, 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B. Bryman & R. Burgess (eds.), Analyzing qualitative data (173-194). London, New York: Routledge.

Ruback, R. B., Greenberg, M. S., & Westcott, D. R. (1984). Social Influence and Crime-Victim Decision Making.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51-76.

S. Boney-McCoy, & D. Finkelhor. (1995). Prior victimization: A risk factor for child sexual abuse and for PTSD-related symptomatology among sexually abused youth. *Child Abuse & Neglect, 19*(12), 1401-1421.

Schwendinger, J. R., & Schwendinger, H. (1974). Rape Myths: In Legal, Theoretical, and Everyday Practice. *Crime and Social Justice, 0*(1), 18-26.

Scott, W. D. (1917). The psychology of advertising: A simple exposition of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in their relation to successful advertising. Small, Maynard.

Shamus R., Jennifer S. Hirsch, Alexander Wamboldt, & Claude A. Mellins. (2018). "I Didn't Want To Be 'That Girl'": The Social Risks of Labeling, Telling, and Reporting Sexual Assault. *Sociological Science, 5,* 432-460.

Skogan, W. G. (1984).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2), 113-137.

Smith, C. P., & Freyd, J. J. (2013). Dangerous safe havens: Institutional betrayal exacerbates sexual trauma. *Jounal of Tramatic Stress, 26*(1), 119-124.

Smith, C. P., & Freyd, J. J. (2014). Institutional betrayal. *American Psychologist, 69*(6), 575-587.

Smith, D. W., Elizabeth J. Letourneau, Benjamin E. Saunders, Dean G. Kilpatrick, Heidi S. Resnick, & Connie L. Best. (2000). Delay in disclosure of childhood rap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24*(2), 273-287.

Sorensen, T., & Snow, B. (1991). How children tell: The process of disclosure in child sexual abuse. *Child Welfare: Journal of Policy, Practice, and Program. 70*(1), 3 - 15.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257-271.

Ullman, S. E., Filipas, H. H., Townsend, S. M., & Starzynski, L. L. (2006). The role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in women's sexual assault experi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798-819.

UN CEDAW. (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DAW%2fC%2fKOR%2fCO%2f8&Lang=en에서 출처.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40 - 50.

Vopni, Vicki. (2006). Young Women's Experiences with Reporting Sexual Assault to Police. *Canadian Woman Studies, 25*(1-2), 107-114.

van Oorschot, W. (1996). *Modelling non-take-up: The interactive model of multi-level influences and the dynamic model of benefit receipt.* Tilburg: TISSER Studies/Tilburg University Press.

Wells, W., Burnett, J., & Moriarty, S. (1989). Advertising. Principles and. Practice,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Williams, Linda S. (1984). The Classic Rape: When Do Victims Report? *Social Problems, 31*(4), 460-467.

Wolfe, D. A., Sas, L., & Wekerle, C.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8*(1), 37-50.

Z.R. Milena, G. Dainora, & S. Alin. (200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Comparison between Focus-Group and In-Depth Interview. *Annals of Faculty of Economics, 4*(1), 1279-1283.

Zinzow, H., & Thompson, M. (2011). Barriers to reporting sexual victimization: Prevalence and correlates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7), 711-725.

Abstract

A Study on Institutional Constrainsts in Speaking out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Hanui Kwon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roaches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it is difficult to talk about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because the current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support the victims' speech. Because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victims' speech, this study defines sexual violence as 'voluntarily inform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by setting the listener, scope, content, and purpose of what the victim is saying', and sheds light on the limitation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reporting one's own damage to the system – Reporting to police, Help-seeking to agency –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lso, by examining the aspects of speaking-out to around, which are being

conducted outside the system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it is intended to reveal the reality in which it is difficult to talk about sexual violence in multiple layers. In this study, the experience of sexual assault is defined as an experience that the person perceives as an 'act in which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en violated against one's own will'.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can be specified as follows. "What ar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telling the police, support agencies, and people around them?"

Considering tha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victims' speech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speaking, it was judged that a qualitative study was most appropriate. According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adult women over the age of 19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and four employees working at organizations that support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types of sexual assault victims experienc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 forced molestation, sexual assault, stealthing, dating violence, digital 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And, the listeners that the study participants talk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were diverse: police, lawyers, counseling agencies, workplaces, university departments, and people around them(family, friends, SNS, public gatherings), etc. In this study, research participants engaged in support organization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regarded as a group of experts with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victims witnessed during the support proces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using the frame analysis method, and

tried to interpret the research results richly by crossing the deductive analysi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inductive analysi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data. By repeatedly reading the transcription data of the in-depth interview, meaningful content was identified, and after constructing a frame for reporting to the police, help-seeking to agencies, and spaking out to people around, content to be the subject of each frame was adopted. Next,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and themes were verified by confirming existing theories or related prior studies. After that, the materials were systematically rearranged by subject, and an organic storylin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meaning of the placed material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tried to organize and explain the factors that prevent victims from speaking out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experienced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o the police were revealed centered on the effects of 'marketization of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limitation of the victim legal aid system', and 'secondary damage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o the police'. Marketization of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means “a market has been formed in which legal services for sexual crime perpetrators are traded by digging into loopholes in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erpetrators recently purchased legal services from a sex crimes corporation, and used counteraccusations of false accusations or defama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victim's personal history and sexual history unrelated to the case as a strategy in a legal battle. As a result of this behavior, legal battles deteriorated and overheated, and legal support drew attention and the influence of legal system on

victims increased, but the legal outcome became difficult to predict. This led to the victim giving up reporting or complaints. The 'victim legal aid system' had limitations in overcoming this situation, and the victims expressed distrust and anxiety about the legal aid system. As a result, there was a phenomenon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in which the number of private responses, such as the hiring of privately held lawyers by victims, increased. And the risk of stratification of victims' responses to sexual assault cases appeared.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d secondary damage in which they were directly prevented from reporting sexual violence and starting an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o the police. The experience of such secondary damage was creating a negative perception of police repor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experienced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help-seeking to agencies are due to 'difficulty in accessing support organizations', 'censorship of support standards', and 'overloading of support organizations' work'.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victims faced the limitations of access to support agencies and had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finding the necessary support resource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upport agency was not properly managed or merely provided superficially, and in a situation where it was difficult to find useful information, victims were exposed to advertisements for advocating for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In another aspect, there was censorship of support standards, which resulted in victims' self-censorship because information on support standards was not clearly provided to the victims. However, more importantly, there was censorship of the supporting agenc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upporting agency'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addition, the workers of the support organizations were facing limitations even in the support work for sexual violence due to the overload of the support organization's work. This shows that the level of support organizations and support systems experienced by victims is very poor.

Third, on the other hand, examining the dynamics that occur wh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tell others about their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outside the system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of those around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forms a large support network that fills the gap in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reaction of the people around them caused another trauma, which put the victims into a state of silence again.

Combining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police reporting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cts such as counter-accusing a sexual assault victim or using the victim's sexual history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should be ban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and improve the loopholes in the legal system that made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marketable and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upport system for victims. Efforts to alleviate the anxiety of victims should also be accompanied by prepar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asures for preventing secondary sexual violence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and by actively disseminating them.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requesting assistance from supporting agencies, measures to expand the resources of supporting agencies and improve the level of support systems and support services should be devised preemp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Internet space, which functions as a gateway for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in modern society, and prepare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cessibility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can be a useful alternative to build an environment that can function as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or gateway in the sexual violence support system by expanding the department in charge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daily organization: schools, companies,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sults found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speaking to the people around us outside the system: we need to strengthen or eliminate the parts that are helpful or obstacles to the recovery of the victim. Efforts such as activation of 'education for neighbors'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related to 'secondary damage' are necessary.

Finall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distinctions and significanc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focused on the fact of sexual violence,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improve the difficulty of speaking out by paying attention to what kind of worries and responses they had after the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Also, research on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s been mainly conducted in the legal and women's academ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ed policy and practical discussions from a social welfare point of view with an interest in the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tigma in the process of talking about their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keywords : speaking out sexual violence, victim of sexual violence, reporting sexual violence to police, support agenci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stitutional constraints,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 2019-26237